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7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가목 중 “결핵검진등”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의 장이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에는 ‘결핵검진’만을 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잠복결핵감염검진’도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방법에 관하여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역학적 검사를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